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11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공사·용역·물품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,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시 1건당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별표 1의 관련항목을 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 및 제13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재무과 협의완료(재무과-14468, 2005. 9. 23)

라. 입법예고 : 2005. 10. 10 ~ 10. 30(20일간, 별도의견 없음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【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확인 등】 란중 제7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관련)				[별표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관련)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【안하가 신고 신청 등록 자정확인등 1. ~ 6.(생략) 7. <u>입찰참가신청(2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이상 수의계약 포함)</u> 8. ~ 10.(생략)	1건	10,000원		【안하가 신고 신청 등록 자정확인등 1. ~ 6.(현행과 같음) <삭 제> 8. ~ 10.(현행과 같음)			